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61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강준현・주철현・이재관
오세희・박용갑・이강일
박민규・한민수・박상혁
박홍배・황명선・송옥주
민병덕・소병훈・이훈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5(진료적정성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진료의 적정성 확보 및 같은 조에 따라 진료를 받는 사람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진료내역 및 진료비용 심사
2.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등 진료 관리
3. 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5(진료적정성 관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0조에 따라 실시하는 진료의 적정성 확보 및 같은 조에 따라 진료를 받는 사람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진료내역 및 진료비용 심사 2.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정성 평가 등 진료관리 3. 중복투약자, 과다의료이용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교육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사업의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2조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